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1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위성곤·김한규·문대림

모경종 • 민병덕 • 박희승

서영교 · 정을호 · 정준호

조인철 · 최민희 · 한병도

한준호ㆍ허 영ㆍ황정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 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음.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 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음.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 로 조사되었음.

이에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의4).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광역 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			
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			
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u><후</u>			
<u>단 신설></u>	광역 시·도(특별시,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포함)별 최소 1		
	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